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(DC)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

1. 서설

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경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(DC형) 부담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2. 관련 노동법령 ; 근로기준법

제74조(임산부의 보호)

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② ~ ③ 〈생략〉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)은 유급으로 한다. 다만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.

⑤ ~ ⑨ 〈생략〉

3. 관련 행정해석 ; 퇴직연금복지과-184, 2020.01.10.

가입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.

- 2018.6.1. 입사한 근로자가 2018. 8월 한 달 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고,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이 1,200만 원이라면, 해당 근로자의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*1200만원/〈7(전체기간)-1(출산휴가기간)〉→200만원*7/12=116.6만원

4. 산전후휴가자의 퇴직연금(DC형) 부담금 산정 사례연구

; 2020.1.1. 입사한 근로자가 2020.4.1.~6.29(90일)까지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

※ 출산후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2020년 임금총액은 2,000만원이라고 가정함.

1) 산정사례 1 : 일할 계산한 경우(90일 기준)

→ 2,000만원/<365일－90일＝275일>

→ 2,000만원/275일 ＝ 72,727원/일

→ 72,727원×365일 ＝ 26,545,455원/년

→ 26,545,455원/12월 ＝ 2,212,121원(년 1회 부담금 납부액기준)

2) 산정사례 2 : 월할 계산한 경우(90일을 3개월로 산정)

→ 2,000만원/<12개월－3개월[1)]＝9개월>

→ 2,000만원/9개월 ＝ 2,222,222원(년 1회 부담금 납부액기준)

※ **결론적으로** 출산전후휴가 90일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금액(2,212,121원)과 90일을 3개월로 월할 산정한 금액(2,222,222원)의 차액으로 10,101원의 차액이 발생하기는 하나 산정방법상의 편리함을 위해 월할 계산할 경우 부담금 납부액에 불리함이 없으므로 **계산방법의 편의상 월할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**. 끝.

제348호

2020.06.01.

노무법인 두레

1) 산전후휴가기간은 쌍둥이 출산을 제외하고 1자녀 출산기준 90일을 부여하므로 90일에 대해 3개월로 산정한 것을 기준으로 함.